

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휴대 전화번호
납 세 의무자 [소유자]				
과세물건 현 황	물건소재지[오피스텔 주소]			변동신고내용
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[건물명 :]	동	번지 동 호	사무용 오피스텔 → 주거용 오피스텔

【신청 전 안내사항】

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

- ▶ 신고는 선택사항으로 기존 1주택 소유로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가 적용된 경우 변동신고로 인해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향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부가가치세 등 과세부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[국세문의 ☎ 126]
- ▶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의 과세적용은 신청일 이후부터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일산서구청장 귀하

※ 재산세 과세기준일(2026. 6. 1.) 현재 세대보유 주택 (신고물건제외)
총 호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 신고인 : (서명)